

## ⚙️ 강사수당

- 경비성격 : 학생, 학부모, 교직원 교육에 초빙한 외래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

구 분	지 급 대 상	기준 단가		비고
		2019년	2018년	
특별강사	◦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해당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	▶ 기본료 200,000원 ▶ 초 과 150,000원		좌동
일반강사 I	◦ 대학(교) 전임교원 이상 ◦ 대(중소)기업 · 국영기업 · 공사의 임원 (이사급 이상) ◦ 판 · 검사, 변호사, 변리사, 의사, 공인 회계사, 기술사 등 자격(면허)증 소지자 ◦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◦ 문화 · 예술 등 특별 분야의 전문 강사 ◦ 4급(상당) 이상의 공무원(장학관 · 교육연구관) ◦ 유 · 초 · 중등학교장 ◦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특별강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	▶ 기본료 160,000원 ▶ 초 과 90,000원		좌동
일반강사 II	◦ 대학(교) 비전임교원 ◦ 대(중소)기업 · 국영기업 · 공사의 직원으로 1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◦ 5급(상당) 공무원(장학관, 교육연구관 포함), 교감, 장학사(교육연구사)	▶ 기본료 90,000원 ▶ 초 과 60,000원		좌동
일반강사 III	◦ 6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◦ 특별강사 및 일반강사 I. II 이외의 자	▶ 기본료 80,000원 ▶ 초 과 50,000원		좌동
보조강사	◦ 각종 실기, 실습 보조자 ◦ 분반, 분임활동 지도	▶ 기본료 40,000원 ▶ 초 과 20,000원		

\* 특별강사는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, 예산 범위 내 시간당 10만원 이내의 강사료 추가 지급 가능

\* 공무원 외부강사 위촉 시 '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', '청탁금지법' 및 동법 시행령 준수

주 : 1) 기본료 : 1시간 미만, 초과 : 기본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단가

▣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않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

2) 학생 대상 교육의 경우 학교급별 정규 교육과정 수업시간을 기준단가로 적용

3) 수강 인원수에 따른 가산 가능

▣ 인원수 79명 이하 : 100%, 80~119명 : 120%, 120~159명 : 140%, 60~199명 : 160%, 200명 이상 200%

4)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 강사인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함

▣ "자신이 속한 기관"에서 기관의 범위는 도교육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, 각급학교 등을 말하며 각각은 독립된 기관으로 봄

5) 공무원이 아닌 경우 원거리 강사초빙에 따른 여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 가능

### ❷ 원고료

- 경비성격 : 용역제공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수수료
- 편성기준 : 2018년도 단가로 동결

구 분	단 위	기준 단가(원)			비고
		2019년	2018년	증감	
국 문	◦ A4용지 1매당(글자 12포인트, 행간160, 상·하 여백 20mm, 좌·우 여백 25mm) ※ 강의 원고료는 시간당 2.5매 이내	15,000원	좌동	-	
외국어	◦ A4용지 1매당(글자 12포인트, 행간160, 상·하 여백 20mm, 좌·우 여백 25mm) ※ 강의 원고료는 시간당 2.5매 이내	13,000원	좌동	-	
파워포인트	◦ 1면당 ※ 시간당 9면 이내	5,000원	좌동	-	

※ 원고별 중복지급 불가

### ❸ 사회복무요원 지급경비

- 경비성격 : 병역법 제26~33조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경비
- 편성기준

구 分	단위	기준 단가			비 고
		2019년	2018년	증감	
중식비 교통비(왕복기준)	식 1일	8,000원 2,600원	7,000원 좌동	1,000원 -	※ 단, 교통비는 부득이하게 1회 이상 환승하는 경우, 기관장(부서장이 확인하여 실비 계상 가능)